

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근로자(통·번역)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

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2월 11일
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

1 서류전형 합격자

채용분야	합격인원	합격자(응시번호)
통·번역	3명	김○○(통번역-01), 이○○(통번역-02), 노○○(통번역-03)

※ 서류전형 합격자는 응시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개별 연락

2 면접시험 일정

채용분야	면접일시	대기시간	대기장소
통·번역	'24. 12. 16.(월) 10:00~	면접일 09:30까지	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7-2동(국민권익위원회) 1층

※ 면접자 대기장소에 대기시간까지 집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**출입 시 담당자가 동행해야 하니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기**해 주시기 바랍니다.
(담당자 동행없이 이동 금지)

3

면접시험 준비물

제출방법	대상자	필요 서류
면접일 당일 소지	면접 응시자	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이메일 제출	공통 (필수)	①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: [붙임] 서식
	서류전형 합격자 (해당자)	② (필수) 합격자 전원 - 요건1 충족자 : 국내·외 통·번역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 증빙자료(학위증, 졸업증명서 등) - 요건2 충족자 : 영어권 대학 학사 이상 학위소유자(학위증, 졸업증명서 등) ③ (우대)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* 경력증명서에 담당직무가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

4

제출기한 및 제출처

- (제출기한) 12.13.(금)
- (이메일 제출) suvn@korea.kr 로 제출
※ 이력서 상 우대요건 해당자는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5

최종합격자 발표

- 2024. 12. 20.(금) 예정
※ 채용 서류 제출 등 채용준비를 거친 후 '25. 1. 2.(목) 채용 예정 (단, 채용준비 절차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)
※ 합격자 명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청렴연수원 누리집 등에 게재하며,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

< 유의사항 >

- ◆ 면접에 불참한 경우, 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◆ 면접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◆ 또한 합격자 통지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채용하기에 부적절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6 문의처

-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(☎ 044-200-7185)

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<p>1.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*공직자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2. ‘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’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 *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*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: 비해당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: 해당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3-1.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3-2.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)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4-1.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 내)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4-3. 권익위법(‘16.3.29. 제14145호로) 시행(‘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
2024년 월 일

생년월일 . . .

지 원 자

(서명)